

제 1319 호
1986. 10. 1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광역교통
 편집인 : 서울특별시 광역교통
 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전
 전화 : 731-6111-3
 서울특별시 종합발전
 전화 : 735-3337

기	공	간	간	공
관	보	재	재	보
관	관	(공)	(공)	관
관	관	관	관	관
관	관	관	관	관

시보

차 례

- ◎ 고 시
 - 제 708 호 :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2
 - 제 736 호 : 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 시행허가취소 2
- ◎ 공 고
 - 제 558 호 : 관인재교부및폐기공고 3
 - 제 559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시행허가변경에따른공람 3
- ◎ 구 공 고
 - 동대문구제 53 호 : 상설시장개설허가폐지 4
- ◎ 사 령

아									
람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708 호

광견병 예방주사 실시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1986. 10. 10
서울특별시장

1. 실시지역 : 서울특별시 전역
2. 실시기간 : '86.10.15-'86.11.10 (27일간)
3. 실시장소 : 관내 동물병원
4. 기타사항 : 본기간중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축견(개)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736 호

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 시행허가취소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24 호 ('86.2.28)




로 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 시행허가된 개봉시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원부족을 사유로 동사업 (소매시장) 취하권이 제출된바,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허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6. 10. 10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- 가. 사업시행지 : 구로구고척동 269-24
 나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 - 개봉시장
 다.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 : 구로구고척동 269-1
 개봉산업(주) 대표 유 우 준
 라. 사업시행규모
- 1) 시행 면적 : 1,004 ㎡
 - 2) 건축 면적 : 477.20 ㎡
 - 3) 건축연면적 : 2,249.98 ㎡
- 마. 사업시행기간 : '86.3-'87.3.31
 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외 조서, 지번 및 지목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 (생략)

<p>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 계인 주소, 성명: 별첨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 고</p> 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58 호</p>	<p>폐 기 인 영</p> 	
<p>관인재교부및폐기공고</p> <p>중구청장의 인 (호적병사용) 및 중 구청계인 (호적병사용)을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교부 및 폐기함을 동규칙 제 6 조에 의하여 공고한다.</p>	<p>재 교 부 인 영</p> 	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6. 10. 10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 <p>1. 사용 및 폐기일자: '86.10.10</p> <p>2. 사용적용 가. 중구청장의 인 (호적병사용) 나. 중구청계인 (호적병사용)</p> <p>3. 폐기적용 가. 중구청장의 인 (호적병사용) 나. 중구청계인 (호적병사용)</p>	<p>공 인 영</p> <p>중구청장의 인 (호적병사용) 및 계인</p>	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59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시행 5가변경에 따른공고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 342 호 (86.5.15) 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시행 허가 된 고척산업용품 종합상가 진입도 로에 대하여 동고시 제 687 호 (86.9.16) 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됨에 따라 사업시행 위치 가 일부 변경되나, 동사업 (도로) 시행허가 변경에 따른 의견을 청 취코저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한다.</p>

<p>2. 관계 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6.10.10 서울특별시</p> <p>가. 사업시행지 구로구 고척동 72의 4-구로구 고척동 90-3 (L=90M 위치변경)의 1개구간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도로) - 고척산업용품 종합상가 진입로 개설공사</p> <p>다. 사업시행 규모 B=15M, L=270M B=12M, L=155M</p> <p>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: 용산구 후암동 358-17 동국산업(주) 대표 문 경 일</p> <p>마. 시행기간: '86.6.1-'86.12.31</p>	<p>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: 별첨(생략)</p> <p>사. 토지(건물)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, 성명: 별첨(생략)</p> <p>아. 공람기간: '86.10.10-'86.10.24</p> <p>자. 기타사항: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위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람.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2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구 공 고</p> </div> <p>◎ 동대문구공고제 53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설시장개설허가폐지공고</p> <p>시장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설시장을 폐지하였기 동법 제20조제 2항 3호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6.10.10 동대문구청장</p>					
허가번호	허가일자	시정명	법인명	소재지	대표자	첨분사유 및 내용
제 62 호	74.7.1	상설시장	자천물산(주)	동대문구 신내동 410-8	윤상일	시장법 제 10 조에 의거 폐지
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ack; display: inline-block; padding: 10px 20px;"> <p>사 령</p> </div>						
◎ 1986년 10월 7일자						령 제 431 호
성명	발령사항				현부서	직급
전형술	원에 의하여 고직을 면함.				의전과	지방행정주사보

◎ 1986년 10월 7일자				령 제 432 호			
성명	발령사항		현부서	직급			
하태석	운영과 파견 근무 ('86.10.7 - '87.4.6 까지)		새종문화회관 (영화조정기사)	지방열정직 7 급 상당			
◎ 1986년 10월 5일자				령 제 433 호			
성명	발령사항		현부서	직급			
김광명	부직을 겸함		전자계산소	시달행정서기			
◎ 1986년 10월 8일자				령 제 434 호			
성명	발령사항		현부서	직급			
주정진	수원기전과		중앙전선본부	지방화공기관			
◎ 공무원 사망 (면직)							
소속	직위	직급	성명	사망일자	사망지	면직일자	
강남구보건소	방역과장	지방보건의과	박철호	'86.10.1	간	'86.10.2	
서울특별시							